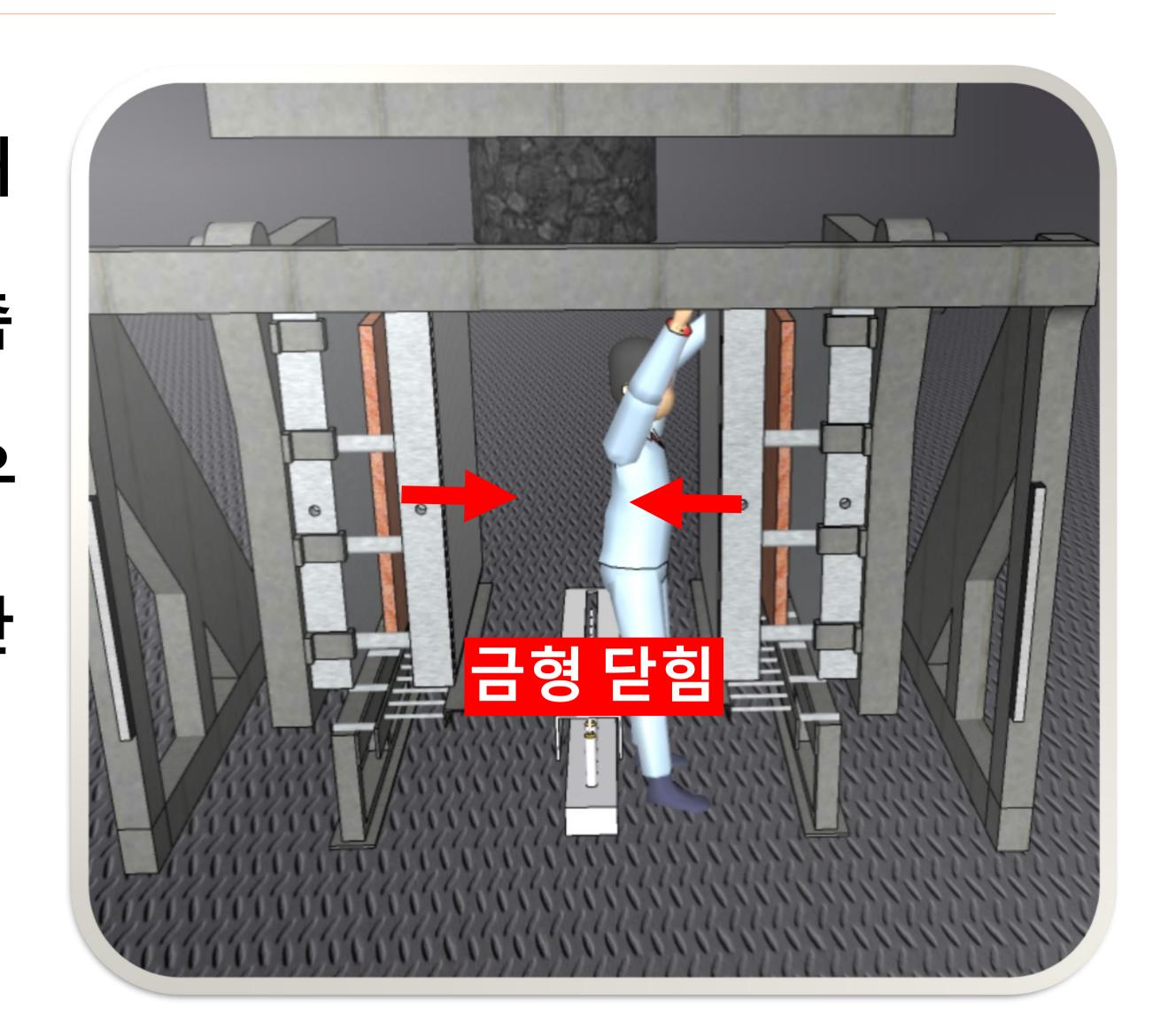


# և 블로우몰딩기 작업 중 금형에 끼임 🗘



## 재해개요

2024. 9. 00.(화) 09:57경, 충남 아산시 소재 사업장에서 재해자가 블로우몰딩기 우측 금형에 원자재(부직포)를 거치던 중 블로우 몰딩기가 동작하며 금형 사이에 끼어 사망한 재해임.



### 발생원인

- ▶ 금형 가동범위 내 방호장치 미비
- 생산제품 특성 상 근로자가 금형 가동범위 안으로 들어가 금형에 원자재(부직포)를 거치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, 금형 내부 방호조치 미비
- ▶ 연속 생산 사이클에서 금형 내부 진입
- 근로자가 금형 가동범위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블로우몰딩기를 정지시켜야 하나, 블로우몰딩기 연속 생산 사이클 사이에 금형 가동범위 안으로 진입

### 예방대책

- 1 방호장치 설치를 통한 끼임사고 예방
  - 근로자가 금형 가동범위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 금형의 가동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안전매트 · 에이리어센서 또는 게이트가드 등의 방호장치를 설치하여 끼임사고 예방
- 2 연속생산기능통제를통한끼임사고예방
  - 제품 생산 특성상 근로자가 금형 가동범위 안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경우에는 설비의 연속 생산 기능 을 통제하고, 근로자가 금형 가동범위 밖에서 설비를 조작하여야만 금형이 동작하도록 조치

※본마S는 동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안전보건공단에서 제작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일부 내용이 재해 발생 상황과 다를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





